

의안번호	2207824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4.1.
추 계 번호	25B0513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해안철도를 건설하여야 함 1.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서해안 일대의 관광자원 활성화 5.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의무규정
2	안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서해안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서해안철도의 수요 예측 2. 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9조에 따른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4	안 제12조 (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서해안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3조 (비용부담)	서해안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3조(기본방향)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3	안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4	안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5	안 제13조(비용부담)	

2. 상세사유

- 제정안은 서해안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른 기본방향(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0조)·역세권개발사업(안 제12조)·비용부담(안 제13조) 등에 따른 관련 소요비용은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을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지역, 시·종착점 등이 확정된 후에 추산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서해안철도 건설사업(군산목포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6)」의 추가검토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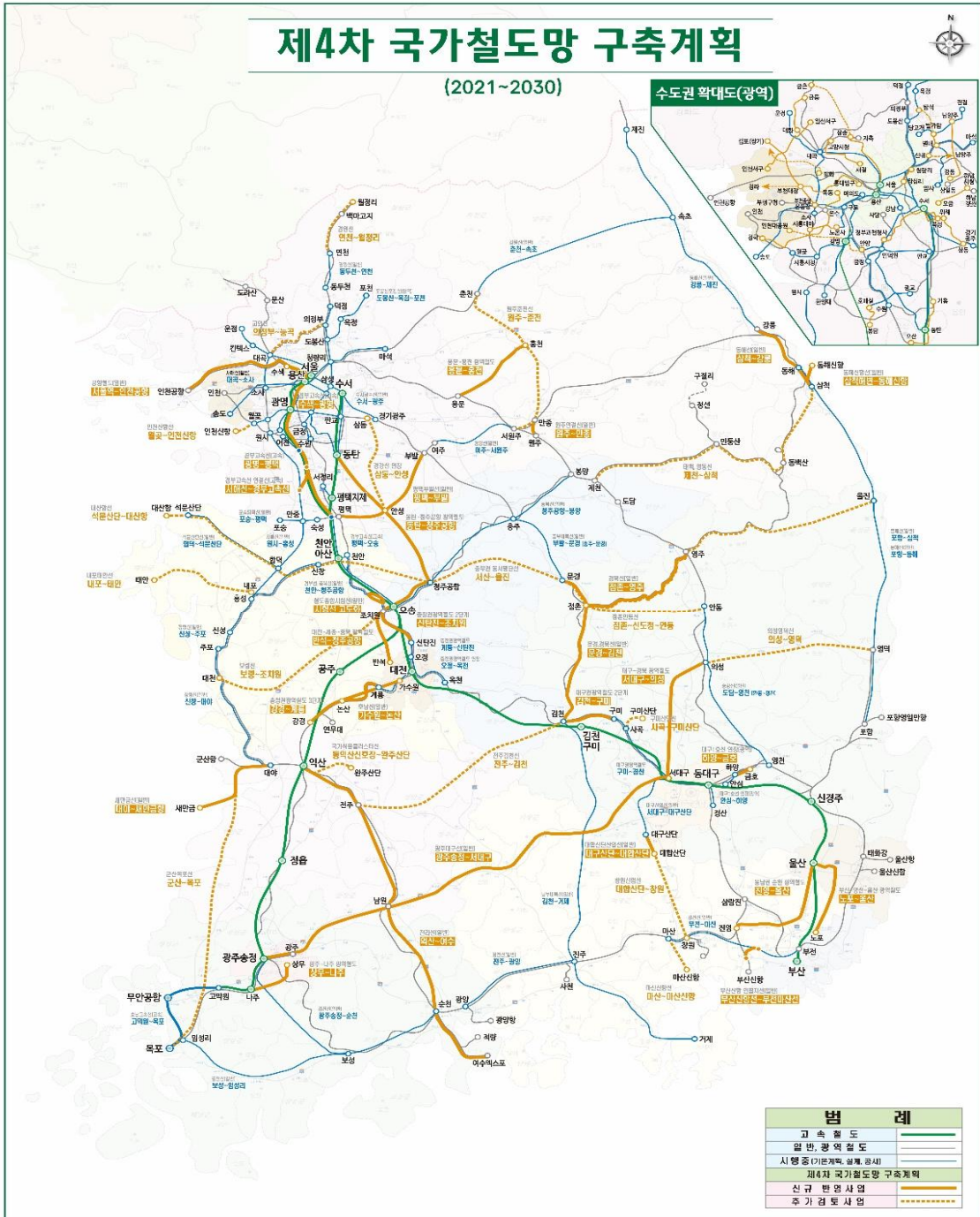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인천대공원~안양	복선전철	21.8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신내~남양주	복선전철	—
서울2호선 청라 연장	홍대입구(까치산)~청라1)	복선전철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화역~검단~김포2)	복선전철	—
경강선 연장	삼동~안성	단선전철	59.4
별내선 의정부 연장	별가람~탑석	복선전철	8.7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송~금촌	복선전철	17.8
교외선	의정부~능곡	단선전철	28.9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경원선	연천~월정리	단선전철화	29.3
전주김천선	전주~김천3)	단선전철	101.1
점촌안동선	점촌~신도청~안동	단선전철	47.9
보령선	보령~조치원	단선전철	82.1
내포태안선	내포~태안	단선전철	57.6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단선철도	11.4
중부권 동서횡단선	서산~울진	단선전철	322.4
창원산업선	창녕 대합산단~창원	단선전철	46.3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8.3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단선철도	18.6
의성영덕선	의성~영덕	단선전철	71.9
원주춘천선	원주~춘천	단선전철	50.7
마산신항선	마산~마산신항	단선전철	13.3
태백영동선	제천~삼척	복선전철	125.4
군산목포선	군산~목포	복선전철	121.0
계			1,256.4

- 1) 대장홍대 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
- 2)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
- 3)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안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

수도권 확대도(광역)



□ 철도건설사업 절차 및 단계별 법적 근거

